주간건설 Review

531호 2018.4.20(금)



(사)한국건설경영협회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홈페이지 : http://www.kfcc.or.kr, 연 락 처 : 02-771-7936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주간건설 Review

CONTENTS

▣ 업계 동향

- 롯데건설, 시흥시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
- SK건설,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
- SK건설 임직원, 서울숲 가꾸기 가족봉사활동
- 대림산업, 더프라미스와 나눔캠페인 3년째 진행

▣ 건설경제 일반동향

- CERIK,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보고서 발간
-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각하

▣ 건설 제도정책 동향

-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
-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8.4.14.(토)~2018.4.20(금)> | 제531호 2018.4.20(금)

<업계 동향>

◈ 롯데건설, 시흥시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

○ 4월18일 롯데건설 시흥은계지구 상업시설 개발사업팀은 시흥시와 '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'을 체결하였음

○ 롯데건설 시흥은계지구 상업시설 개발사업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활동과 기부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매월 1~2회에 걸쳐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



시흥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롯데건설 직원들

○ 한편,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은 노숙인 등의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베다니마을 뜨란채쉼터(신천동 소재)로 이동해 청소봉사와 텃밭가꾸기 활동을 진행하였음

◈ SK건설,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

○ 4월18일 SK건설은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협력업체 동아지질 본사를 방문해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
○ 이날 행사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SK건설 임직원, 최재우 동아지질 대표와 행복날개협의회(SK 협력사 모임) 임원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음

○ 이날 간담회에서 조기행 부회장은 협력사 경영현황과 애로



간담회에 참석한 조기행 부회장(앞줄 왼쪽 세 번째)과 행복날개협의회 임원사 대표들

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앞으로도 비즈파트너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, 올해부터 SK건설이 보유한 지식, 경험, 노하우, 사무공간 등 자산을 공유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

◈ SK건설 임직원, 서울숲 가꾸기 가족봉사활동



서울숲에서 열린 봄맞이 숲가꾸기 가족봉사 활동에 참여한 SK건설 임직원 가족봉사단

○ 4월14일 SK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봄맞이 숲가꾸기 가족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음

○ 이날 행사에 참가한 SK건설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은 서울숲에 위치한 곤충식물원과 나비정원에서 꽃 심기와 화단 정리, 낙엽 쓸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음

○ SK건설은 2005년 6월 창덕궁 고궁청소를 시작으로 매년 가족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, 44번째로 실시된 이번 활동으로 누적 참여인원이 총 5200명을 돌파하였음

◈ 대림산업, 더프라미스와 나눔캠페인 3년째 진행



미얀마 빤따노 지역에 어린이들에게 전달된 대림산업 임직원들의 티셔츠 페인팅 캠페인 완성품

○ 4월10일 국제구호협력기구인 더프라미스는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나눔활동을 통해 만든 510개, 119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힘

○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만든 510개의 티셔츠와 운동화는 개발도상국 아동의 체온유지, 위생과 토양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, 더프라미스 사업지인 미얀마와 인도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음

○ 한편, 더프라미스는 2008년에 설립되어 네팔, 동티모르, 미얀마, 인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해외 빈곤층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교육, 보건위생, 지역개발, 긴급구호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, 2013년부터 자원 봉사자나 기업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상품 캠페인을 진행하여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음

◈ CERIK,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보고서 발간

○ 4월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수준과 지역별·유형별 인프라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여 선정한 1,244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골자로 한 「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」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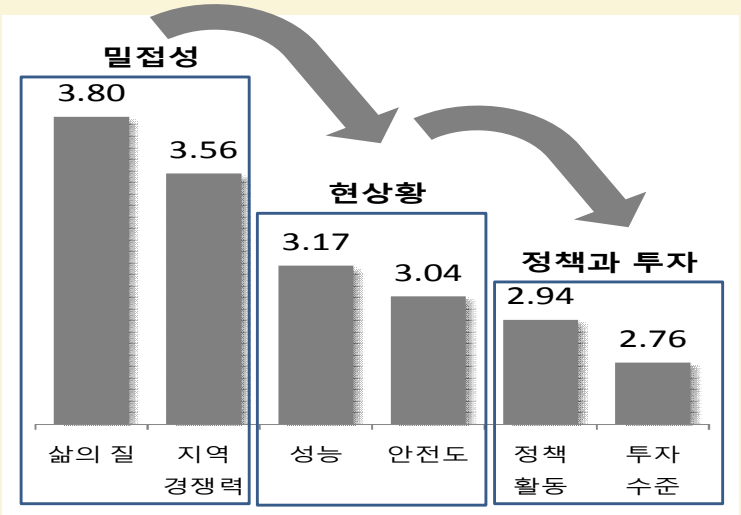
<주요내용>

❒ 국민들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

- 전국 8,54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31일~3월 7일 기간 동안 설문 실시
-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,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,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
-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지역 경쟁력(3.56점)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(3.80점)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평가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

<국민들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인식 결과>

(단위 : 점(5점 만점))



-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(3.0점) 수준에도 미달
- 설문결과 현재와 미래 인프라 시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통 수준(3.0점)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에 불과

❒ 지역별 핵심인프라 사업

- 연구과제에서 선정한 1,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1개, 422조원 규모이며,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, 20조원 규모로 추정
-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며, 충북, 부산, 경남, 경기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가 많고, 경기, 인천, 경북, 전남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큼
- 사업분야로는 교통·물류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크고, 사업비를 기준으로는 교통·물류 다음으로 산업·경제, 문화·관광·체육, 기타, 주거·교육·복지, 환경 순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존재
-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기, 부산, 울산, 강원은 산업·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되었고 대구, 대전은 주거·교육·복지 부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

<지역별 인프라 현황 및 핵심 인프라사업 제시(건수, 금액)>

지역	인프라 현황 진단	건수	금액(조원)
부산광역시	- 미집행·일몰제 대상 도로 5.8조원, 하수도 보급률 광역권 최하	167	21.5
대구광역시	- 대구국제공항 수용능력 포화상태, 산업단지 노후화 심각	43	26.0
인천광역시	- 자동차당 도로연장 2.05,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1.67로 최하 수준	71	38.4
광주광역시	- 교량·댐·건축물·하천·상하수도 등 1·2종 시설물 급속 노후화	28	3.8
대전광역시	- 시내 18개 주요 간선도로 평균 통행 속도 '시속 22.6km로 최저 수준	34	8.5
울산광역시	-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18.6% 불과, 대체 교통수단·교통망 공급 시급	56	4.5
경기도	- 평균 통근·통학 소요시간 왕복 72.4분으로 전국 평균 상회	100	126.9
강원도	- 일반도로 총연장 1946km 중 67%가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	50	20.6
충청북도	- 4차로 이상 도로비율 약 27%로 크게 저조	266	22.9
충청남도	- 도로 포장율 80%, 하수도 보급률 전국 평균 미달	34	14.6
전라북도	- 도로연장 47% 도시권 집중, 지역균형발전 대책 시급	50	22.4
전라남도	- 철도망 부족, 공공건축물 내진율 33% 불과	57	31.8
경상북도	- 도로 1149km 내구연한 초과, 교량 10% 30년 초과	76	72.5
경상남도	- 홍수 피해 심각한데도 개수율 43%, 주거시설 대다수 노후	162	15.9
제주도	- 여객 터미널 수용력 초과, 상수도 유수·누수율 최악	50	11.6

❒ **정책과제**
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필요
- 특히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,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 필요
-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,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, 세목 신설권(지방세 법정외세) 및 선택권, 세율 결정권,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검토
- 노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,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(2017.11.15.)되어 있는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

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각하

○ 서울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이 최근 '각하' 결정됨

○ 조합원당 수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일단 내고 나서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이미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위축된 재건축시장이 당분간 되살아나기 어려울 전망

<주요내용>

❒ **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**

-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인본이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지난 4월10일과 12일 각각 각하 결정을 내림
-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11개 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 한 것
-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문을 통해 ***"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"***며 ***"초과이익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"***고 밝혀 11개 조합에 아직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상태가 아닌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

❒ **향후 전망**

- 이번 각하 결정에 따라 재건축조합들은 아파트 준공 인가 이후에나 위헌 소송이 가능해질 전망

-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각 조합은 부담금 산정과 부과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, 이번 소송 각하 결정은 일단 부담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으로 해석
-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또는 위헌 결정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

◈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

○ 최근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(주 68시간→주 52시간)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옴에 따라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마련·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

○ 단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권에 놓인 현장(준공 임박 현장 등)을 지원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는 '공공건설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'을 마련할 예정

○ 다만, 이미 계약이 체결된 민간공사 현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변경이 어려우므로,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'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'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

<대책 주요내용>

❒ 근로시간 단축 영향권에 놓인 현장 지원 방안

-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 지체상금 우려가 있거나 준공일이 시급한 현장에 대해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반영키로 함
- 다만,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 인정 현장의 대상과 범위는 아직 불확실한 실정이나, 건설업계는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내거나 현재 건설 중인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
- 공기연장과 공사비 반영 방식은 과거 '주5일제 도입 당시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'을 시행한 것처럼 통첩 시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❒ '공공건설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' 마련 추진

-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반영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적정공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'공공건설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'을 마련할 예정
- '공공건설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'은 돌관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적절한 공기로 인한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,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,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후적인 요인들을 공기 산정에 반영함과 동시에, 미세먼지 등에 따른 조업 단축 등도 고려대상이 될 예정
- 한편, 국토부는 민간공사에도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

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

○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'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'에서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을 발표

○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분야 50개 과제를 담고 있음

* 4대 전략 : △함께하는 청렴 △깨끗한 공직사회 △투명한 경영환경 △실천하는 청렴

<건설분야 주요 과제>

❒ 공공분야 '갑질' 근절

- △공공분야 '갑질'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△'갑질' 사례 조기 적발 및 엄정 대응 △피해자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등

❒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부당한 하도급·기술편취 등 개선

- 공사기간 연장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으로 추가

❒ 기술유용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

- 소극적 신고사건 처리 위주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체제로 개편하는 등 법집행 방식을 개선하고,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(T/F) 운영('17.12월~)
-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해 ①기술자료의 보호범위 확대, ②기술자료 유출 금지규정 도입, ③기술유용 조사시효 연장(3년→7년) 등 제도개선
-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확대 추진 및 과징금 상향

❒ 공공분야 예산낭비 초래나 국민생활에 피해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중점감시

- 정부·공공기관 발주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구분할, 물량 나눠먹기, 가격 담합 등의 입찰담합 효과적 적발·차단

❒ 효과적인 담합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개선 및 협업

- 고도화된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 운영('17.12월~)을 통해 담합 징후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악
- 공정위·발주기관(20여개)간 입찰담합방지협의체를 운영하고(연2회) 해외 경쟁당국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국제 공조 강화

❒ 담합 적발 시 기대비용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대책 운영

- 고발활성화, 과징금 상한의 상향 조정 등 행정·형사 제재 강화
-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촉진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

❒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관리의무와 불법행위 연대책임 강화

- 하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, 원도급자의 불공정 행위가 밝혀지면 현행 과태료(100만원) 처분을 영업정지·과징금으로 강화

- 필요 시 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신설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)하여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시장질서 회복

❒ 정비사업 금품제공 등에 대한 처벌 강화

-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·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·감독 의무 부여

❒ 정비사업 입찰제안서 기준 등 정비

- (시공 무관 사항 제외) 건설사가 입찰 제안서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(이사비, 재건축부담금 등)은 제안 금지 조치
- (시공내역 등 제출) 과도한 대안설계 방지를 위해 입찰제안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추진

❒ 공공조달 분야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

- (감경 배제) 뇌물을 제공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'입찰참가자격 제한' 시 감경 배제 추진
- (제재규정 신설) 하도급자를 통한 뇌물 제공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한 사각지대의 경우, 관련 개별법령에 영업정지·과징금 등 제재규정 신설

  ※ 공공조달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는 국가·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, 뇌물 제공 시 법령 상 제재(입찰참가자격 제한) 불가

❒ 개별법상 제재 연계

- (연계 강화)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, 허가·등록관청에 통보하여 개별법령 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강화

  ※ 관련 예규·매뉴얼 등에 통보 의무 명시, '나라장터 시스템'을 통한 안내 확대 등

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○ 지난 3월30일 고용노동부는 '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개선'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입법예고함

○ 개정안은 5월9일까지 관련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

- 산재은폐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출하되, 질병사망자 중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자는 포함하고, 원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종합건설업체까지 확대함
- 이는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을 환산재해율로 산정하고 있어 그간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 은폐 유인이 많았고, 질병 사망자의 경우 실제 질병을 야기한 사업

장과 이후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

❒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개선

-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, 건설업의 경우, ‘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’하고 있는 것을 “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, 재해자 본인이 확인”토록 개선함
- 이로써 근로자 측의 시각은 배제되는 문제의 해결과 사업주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